

2026년 스마트농업 현장실증 지원사업(비R&D) 참여기업 모집공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진원)은 산업통상부에서 시행하는 지역 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도 스마트농업 현장실증 지원사업 공고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3월 24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I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라북도 스마트 농생명^D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이 개발한 시제품을 농업 현장에 적용·실증하여 최종 사업화 지원

□ 지원대상 : 스마트농업 현장실증 6社

1-1. 【현장실증 지원】 5社, 1-2. 【우수제품 농가보급·실증】 1社

< 자격요건 >

- ① 본사, 연구소, 공장 등 기업의 일부 시설이 전북 클러스터 단지* 내 위치
* [붙임1] 전북 클러스터 단지 현황 참조
** 사업기간 내 이전기업도 신청 가능하나, 미이행 시 사업비 반납 *[양식 8] 참조
- ② 사업자등록증 내 업종 구분이 스마트농생명 관련일 것 *[붙임3] 참조
- ③ 현장실증 지원의 경우 TRL 6단계 이상일 것 *[붙임2] 기술성숙도 참조
- ④ 우수제품 농가보급의 경우 판매 이력이 있는 상용화 제품일 것
* 판매 건수 5건 이상 이거나, 판매 누적금액 3,000만원 이상 제품

1) 스마트농업 핵심기술(각종부품, 빅데이터, AI, SW기술, 클라우드 등)과 지능형 농기계(로봇, 자동화, 에너지 관리 등) 등 4차산업 핵심기술과 농생명 산업간 융합을 통한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임

□ 지원기간 : 협약일 ~ 2026. 12. 31. * 사업수행은 11.30. 까지 완료

□ 지원내역

지원내역	내용																						
1-1 현장실증 지원 및 실증장소 제공	< 테스트베드 구축 개소 수에 따라 차등지원 >																						
	구분	2개소(3社)	3개소 이상(2社)																				
	지원금	3,000만원 내외	5,000만원 내외																				
	지원 항목	설치, 운반, 유지보수, 철거, 연구활동비(여비, 회의비), 제품고도화 등 ※ 제품 제작비용 사용 불가																					
	※ 자부담(현금) 10%(300~500만원) 및 부가가치세(vat) 기업 부담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테스트베드 구축 수가 조정될 수 있음																						
	< 농업기술센터 테스트베드 교육장 연계 지원 >																						
	※ 신청기업은 농업기술센터를 최우선으로 활용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업이 섭외한 민간 농가를 활용 가능 ※ 현재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와 협의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수요조사를 진행중으로 사업선정시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제공 가능한 농업기술센터 리스트 공유 후 협의 예정 ※ 별도로 협의한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경우, 사전문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style="width: 30%;">신청·접수</th> <th style="width: 10%;"></th> <th style="width: 30%;">협의</th> <th style="width: 10%;"></th> <th style="width: 10%;">확정</th> <th style="width: 10%;">희망센터활용</th> </tr> <tr> <td>사업신청 시 희망연계센터 · 사전섭외농가</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최종 선정</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미확정</td> <td style="text-align: center;">사전섭외 민간농가 사용</td> </tr> <tr>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d></td> </tr> </table>	신청·접수		협의		확정	희망센터활용	사업신청 시 희망연계센터 · 사전섭외농가	▶	최종 선정	▶	미확정	사전섭외 민간농가 사용			▶							
신청·접수		협의		확정	희망센터활용																		
사업신청 시 희망연계센터 · 사전섭외농가	▶	최종 선정	▶	미확정	사전섭외 민간농가 사용																		
		▶																					
1-2 우수제품 농가 보급·실증 (10호)	구분	지원금	우수제품 농가보급																				
	내용	2억원(자부담 50% 포함) 국비 1억원 / 자부담 1억원	10호 내외 (제품 단가에 따라 조정)																				
	지원 항목	(국비) 솔루션 서비스(제품) 제작비용 (원가계산서 기반) (자부담) 추가장비, 설치비, 교육비, 컨설팅, 데이터관리 인건비 등																					
	지원 불가항목	토지, 부지, 상하수도인입, 서버구축 등 기반조성 자본적 지출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소모성 비용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통신비 등 공과금성 비용																					

※ 「1-1 현장실증 지원」 및 「1-2 우수제품 농가 보급·실증」 중복지원 가능하며, 지원사업이 모두 선정되었을시 중복성을 검토하여 과제가 조정될 수 있음

□ 모집방법

- 접수기간 : 2026. 3. 24.(화) ~ 4. 24.(금) 15:00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불가
- 수 신 처 : lgh0705@koat.or.kr

※ 접수 후 담당자 이건희 전임연구원(063-919-1718) 메일 접수 확인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양식1] 지원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공고문 내 첨부파일 확인
2	[양식2] 사용인감계	
3	[양식3] 신청자격 적정성 체크리스트	
4	[양식4] 확약서	
5	[양식5]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6	[양식6] 테스트베드 활용 동의서	
7	[양식7] 민감부담금 출자 확약서	
8	[양식8] 기업 이전 확약서	
9	(우수제품보급) 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	별도 준비
10	(해당 시) 사업자등록증 1부	
11	(해당 시) 법인등기부등본 1부	
12	4대 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과제 참여자 확인용)	
13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14	최근 3년간(2023~2025) 재무제표 각 1부 * '25년 미결산인 경우 가결산 및 추정 재무제표 제출 또는 2022~2024년 3개년 재무제표 제출 * 업력 1년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제출	

※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이메일 접수

* 압축파일명 : ['26년 스마트농업 현장실증 지원_기업명]으로 제출요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절차가 끝나면 자체 폐기 예정

※ 기재한 내용과 제출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외사유

○ 타 유사 정부지원사업 중복선정의 경우에는 신청제외

- 접수마감일 기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4조의2(지역 혁신클러스터 전담관리기관)’이 운영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제재 및 환수기준으로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은 경우
- 동일 사업 아이템(제품 및 기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는 타 사업

○ 다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 기업의 부도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선정평가

○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적격성 심사 후 서류·발표 평가 진행

- 선정방식 : 합산 평균 점수 60점 이상 과제 중 우선순위 선발

* 적격성심사 '부합' 판정 기업은 평가 제외

- 선정절차 : 적격성심사 → 서류평가(모집 수 2배) → 발표평가

*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협약 전에 현장 검증을 실시하며, 평가 자료와의 불일치 또는 준비 부족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1-1. 【현장실증 지원】 평가 기준(배점)

구분	평가요소	배점
적격성 심사	○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제외사유 해당 ○ 구비서류 및 작성 내용 성실도 전반 ※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부합으로 판정	적합·부적합
서류 평가 (4월 말)	○ 사업 필요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제품 개선을 위한 실증 시나리오 - 사업화 전략 (신규고용, 매출 실현, 판로개척 등) - 사업 결과에 따른 기대효과	40
	○ 농업기술센터 및 민간농가와 연계 협력 방안 등	20
	○ 수행 역량(전문인력, 특허, 매출 등)	20
	○ 사업비 구성 및 예산 계획의 적정성	20
발표 평가 (5월 초)	○ 스마트농업 분야 전문지식 및 실증 사업 이해도	40
	○ 사업계획서 전반에 대한 세부내용 전달력 - 참여제품의 작동원리 등 기술적 설명(시연 영상 등) - 실증계획, 사업화 전략, 기대효과 등	40
	○ 사업 참여 의지 및 태도 - 관련 시장동향, 선도기업 사례 등 설명 - 평가위원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20

□ 1-2. 【우수제품 농가보급·실증】 평가 기준(배점)

구분	평가요소	배점
적격성 심사	○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제외사유 해당 ○ 구비서류 및 작성 내용 성실도 전반 ※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부합으로 판정	적합·부적합
서류 평가 (4월 말)	○ 사업 필요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과의 적합성 - 사업 참여 제품의 적정성 및 우수성	40
	○ 유사 서비스 대비 기술 차별성 및 기술 수준	20
	○ 수행 역량(전문인력, 특허, 매출 등)	20
	○ 사업비 구성 및 예산 계획의 적정성	20
발표 평가 (5월 초)	○ 스마트농업 분야 전문지식 및 보급 사업 이해도	40
	○ 사업계획서 전반에 대한 세부내용 전달력 - 보급 제품의 기술적 설명 및 제품의 우수성 - 고도화계획, 사업화 전략, 기대효과 등	40
	○ 사업 참여 의지 및 태도 - 관련 시장동향, 선도기업 사례 등 설명 - 평가위원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20

※ '25년 실증지원사업 우수기업은 지원 시 최종 가산점(3점) 부여

V 유의사항 안내

- 지원신청 및 협약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지원기업이 부담함
- 제출된 서류는 심사용도 이외에 외부공개를 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지원금 및 추진일정 등은 내부사정에 의해 조정 될 수 있음
- 지원서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검증(실사)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기업은 반드시 응하여야 함
- 지원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양식 외)를 제출해야 함
- 선정기업은 협약 시 정부지원금(국비) 해당분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자부담 발급)을 제출하여야 함
- (최종결과보고) 선정기업은 사업의 일련의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자료 일체(영상, 사진

등)를 포함하여 결과보고서를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 (자료제출 의무) 선정기업은 사업수행 중 농진원에서 요청하는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함. 더불어 선정기업은 사업종료 후 2년간 본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자료요청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과제 수행 후 성과 측정을 위한 매출, 고용 관련 증빙자료와 사업관련 수요조사를 요청할 시 데이터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음
- 선정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일부러 누락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음
- 또한 선정기업이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 시 환수조치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받을 수 있음
- (수시점검) 농진원은 선정기업의 사업 진행상황을 수시점검하며, 불이행 내지 미진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이때 선정기업은 시정요구에 즉각적으로 응해야 하며, 시정요구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정부지원금 지급시기 및 사용방법은 선정기업 대상으로 별도안내
- 사업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약서(계약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 협약
- 선정기업이 타인의 아이템 및 기술 등을 모방하거나 도용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선정기업에 있음
- 사업 종료 전 외부회계법인을 통하여 전체 사업비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이 때, 선정기업은 정산보고서 작성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함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VI 문의처 및 안내사항

□ 문의처(한국농업기술진흥원)

구분	담당자
전화 및 이메일 문의	스마트농업진흥팀 이건희 전임연구원 lgh0705@koat.or.kr, 063-919-1718

□ 관련 법령

○ 근거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27조(지역혁신융복합 단지의 지정), 제28조(지역혁신융복합 단지의 육성)

2026. 3. 24.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붙임1

전북 클러스터 단지 현황

구분		지구명	
벤처기업육성촉진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 단지	국가 산단	익산국가산업단지	
	일반 산단	김제순동일반산업단지 김제지평선산업단지 완주일반산업단지 완주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	익산제2,3,4일반산업단지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정읍제2일반산업단지
	농공 단지	고창복분자농공단지 군산서수농공단지 군산임피농공단지 남원노암제3농공단지	순창인계농공단지 익산함열농공단지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
연구개발		전북연구개발특구	
외국인투자지역		국가식품클러스터(외국인투자지역포함)	
혁신도시		전북 혁신도시	
소재·부품·장비 특화		전주친환경복합제1산업단지 전주친환경복합일반산업단지(3-1)	
기타	창업보육구역		
	김제민간육종연구단지		

※ 단지 지정현황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26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비R&D) 기업지원 프로그램의 기회발전특구 지원대상 안내
 - 1) 기회발전특구지정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투자협약(MOU, LOI 등 진행을 한 투자(예정) 기업**
 - * 상기 투자협약기업은 (광역시·도 단위) 지방정부의 기회발전특구계획에 반영된 기업
 - * 투자협약이후 실제투자를 진행한 기업은 평가시 우대 부여
 - * 기회발전특구지정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투자협약을 파기·최소한 경우 사업비 전액 회수 (사업기간 종료후라도 파기·최소한 경우를 알게될 경우도 전액 회수조치)
 - 2) 지방정부의 기회발전특구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기회발전특구 지정고시(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10호)에 기 입주해 있던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회발전특구 지정 현황

구분	지구명
전주시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3-1, 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 등
익산시, 정읍시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
김제시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백구일반산업단지
남원시	남원일반산업단지

※ 상세 지번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통합고시-산업통상부 제2026-10호】** 참조

붙임3

기술 성숙도(TRL) 단계정의

TRL단계			단계별 정의
기초 연구	1	【기초실험】 기본원리발견	• 기초이론 정립 단계
	2	【개념정립】 기술개념과 적용분야의 확립	• 기술개발 개념 정립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 단계
실험	3	【기본성능검증】 분석과 실험을 통한 기술개념 검증	•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또는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 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단계 • 개발하려는 부품 또는 시스템의 기본 설계도면을 확보하는 단계 등
	4	연구실 환경 에서의 Working Model 개발	• 시험샘플을 제작하여 핵심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 • 3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 중에서 최적의 결과를 선택하는 단계 • 컴퓨터 모사가 가능한 경우 최적화를 완료하는 단계
시제품	5	【장치/시스템 시제품 제작】 유사 환경에서의 Working Model 검증	• 확정된 공법/재료/시스템의 실험실 시제품 제작 및 성능 평가가 완료된 단계 • 개발 대상의 생산을 고려하여 설계하나 실제 제작한 시제품 샘플은 1~수개 미만인 단계 •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의 핵심성능으로만 볼 때,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목표를 달성한 단계
	6	【시제품 성능평가】 유사 환경에서의 프로토타입 개발	• 파일럿 규모(수개~양산규모의 1/10정도)의 시제품 제작 및 평가가 완료된 단계 • 파일럿 규모 생산품에 대한 생산량 불량률 등 제시 • 파일럿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단계 • 생산기업이 수요기업 적용환경에 유사하게 자체 현장테스트를 실시하여 목표성능을 만족시킨 단계 • 성능평가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공인기관의 성적서 확보
실용화	7	【시제품 성능평가】 실제 환경에서 시제품 데모	•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 • 장치 및 재료개발의 경우 수요업체에서 직접 파일럿 시제품을 현장평가(성능, 신뢰성에 대해서도 평가) • 가능하면 KOLAS 인증기관 등의 신뢰성 평가 결과 제출 등
	8	【시제품 인증】 상용제품 시험평가 및 신뢰성 검증	•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단계
양산	9	【사업화】 상용제품생산	•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

붙임4

스마트농생명 핵심 및 연계코드

구분	KSIC 분류코드	
핵심코드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07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801	배합사료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연계코드	0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10129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가금류 제외)
	10309	기타 과일·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713	과자류 코코아 제품 제조업
	10742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10743	장류 제조업
	10751	도시락류 제조업
	10759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10792	차류 가공업
	20311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핵심코드 및 연계코드 중 1개라도 업종이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함